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업재편계획 승인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등 의제〉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87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사업재편계획 승인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등 의제	3
※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진욱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28.
3. 회부연월일 : 2025. 7.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중동, 중국 등에서의 세계적인 설비 증설에 따른 인해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석유화학기업은 범용품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탈피하기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라 함)을 활용해 설비 폐쇄 및 운영 효율화, 합병,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등 자발적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현행 기업활력법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달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의 기업결합을 행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만 제출할 수 있을 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별도 심사를 다시 받도록 정하고 있음. 심지어 사업재편계획에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인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 심의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사실상

특례 규정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구조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기업결합과 공동행위가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및 공동행위 인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다만,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그에 포함된 기업결합 승인 및 부당 공동행위 인가 요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및 고려하도록 하여 기존 규제 권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음(안 제10조제8항 및 제24조의2).

Ⅲ. 검토의견

1. 사업재편계획 승인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등 의제

개정안은 주무부처¹⁾의 장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동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신고 심사결과를 통지받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예외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10조제8항 및 제24조의2).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 ~ ⑦ (생략) ⑧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주무부처의 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업결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7. “주무부처”란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무부처를 정한다.

현행	개정안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판단할 때 주무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제24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의 효율성 증대효과,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산업구조조정 효과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기업결합 및 공동행위 인가에 관한 특례) 주무부처의 장이 제10조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업결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말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동 법률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²⁾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기업합병 등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를 받고 부당한 공동행위 예외 인가를 받아야 함.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³⁾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⁴⁾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입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에 따른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음.

이에 대해 현행법 제10조제8항은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결합이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기업간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정위가 해당 사업 분야의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업결합신고를 심사하도록 함.

그리고 현행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기업요청시 사업재편계획 심의와 공정위 인가⁵⁾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공정위 인가를 모두 받는 데 따른 행정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려고 함.

그런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의 경우 간이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이를 수리하는데 평균적으로 12~13일 가량 소요되고 있으나, 기업간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합병 등의 경우에는 경쟁제한성 우려가 있어 일반심사에 해당하며, 이 경우 2024년 평균 104일(36건, 자료보완기간 제외시 41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⁶⁾.

[표 2] 최근 5년간 기업결합신고 심사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8월말
심사건수(건)	1,111	1,025	925	795	414
평균심사기간(일)	11.8	12.5	12.6	11.8	13.0

또한 현행법 제24조의2 후단에 따르면 공정위 인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⁷⁾⁸⁾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간⁹⁾¹⁰⁾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두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단축되지 않고 있음.

최근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으로서는 조속하게 기업결합신고 수리 및 부당한 공동행위 예외 인가를 받아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동 법률은 사업재편을 위한 관련 절차 및

6) 법령상으로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한 경우 90일을 연장하여 총 12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함.

7) 시행령에 따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공시기간(최장 30일)을 고려하면 총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8) 참고로 공정위는 2025년 8월말 현재까지 공동행위를 2건('88 벨브제조업, '10 레미콘업) 인가함.

9) 법령상으로 주무부처의 장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여 총 60일 이내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도록 함. 다만, 사안이 복잡·방대한 경우에는 검토 및 심의기간을 각각 60일로 연장하여 최대 12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함.

10) 참고로 최근 5년간 사업재편계획 평균 승인기간은 21~28일 가량으로 나타남.

구분	'21	'22	'23	'24	'25.8월말
심사건수(건)	108	106	93	57	32
평균심사기간(일)	21.7	27.7	24.0	27.0	26.0

규제 등을 개선하려는 목적임에도 현행 규정상으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안 제24조의2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수리 및 부당한 공동행위 예외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신청기업의 행정절차상 부담을 간소화하고자 함.

즉, 개정안에 따라 기업결합신고 및 부당한 공동행위 예외 인가에 대해 인허가의제 제도가 도입되고, 「행정기본법」에 따라 공정위와의 협의기간은 20일 이내¹¹⁾에 이루어지게 되며, 산업부가 사업재편계획을 검토할 때 산입되지 않는 기간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음.

다만, 판례 및 학설에 따르면 인허가의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주된 인허가 뿐만 아니라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도 충족¹²⁾해야 하므로,

11)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인허가: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16①)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12)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두39590 판결

대법원은 “건축허가에 인·허가의제 효과가 수반되는 경우, 건축법상 허가 요건 뿐 아니라 의제되는 관련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요건도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실체집중설’을 부정함.

기업결합신고 및 부당한 공동행위 예외 인가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 및 기준은 생략되지 않고 현행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예규(「기업결합 심사기준」,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따른 검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주무부처의 장이 신고 수리 및 인가 주체로 변경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인허가청으로서 주된 인허가청인 주무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효과가 있음.

동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로 변경되므로 보다 기업친화적 관점에서 검토되고, 기업재편계획 제출기업으로서 기업결합신고 및 부당한 공동행위 예외 인가 절차를 진행함에 따른 행정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특히 최근 석유화학산업 등의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이 발생하여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하여 향후 석유화학 업계에서 제출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필요한 금융, 세제, R&D, 규제완화 등을 지원할 계획임¹³⁾.

주무 부처와 해당 업계가 함께 협력하여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고, 구조조정이 시급한 분야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 등이 지연될수록 기업의 손실·적자 등이 누적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절차상 부담을 간소화하여 사업을 조속하게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신고 수리 및 부당한 공동행위 예외 인가는 효율성 증대효과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성 심사 등에 대한 엄밀한 경제적·법적 분석이 필요하여 현행과 같이 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신고 수리 및 인가를 할 필요가 있고, 향후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또는 공동행위 인가 심사를 신청할 경우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는 설명(참고자료 참조)이므로¹⁴⁾, 동 개정안 심사시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56

13)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민관이 함께 본격 시동, 산업부 보도참고자료, 2025. 8. 20.

-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 체결...무임승차 기업은 단호히 대응 -

14)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구조조정 효과 등’이 아닌 ‘경쟁제한성 분석결과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한다는 입장임.

참고

개정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 수용불가

- **경성 공동행위**는 가격인상, 일반 국민후생 감소 등 심각한 **경쟁제한효과**를 야기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 이는 **해외 경쟁법**에서도 금지, 조사·제재대상 행위로서 엄격하게 규율됨
 - 따라서, 이러한 공동행위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공정거래법상 인가 제도를 통해 필요 요건을 면밀하게 심사 후 허용되고 있음
-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2항 각호) ①불황극복, ②연구·기술개발, ③거래조건 합리화, ④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 개정안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인가 사유 및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 특성 및 사업재편 유형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재편계획상 공동행위가 허용될 우려**
 - 현행 기활법령,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의 사업재편 승인기준에는 공정거래법상 인가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재편 승인을 곧바로 인가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
- 공동행위 인가는 **효율성 증대효과**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성** 심사 등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므로, 최종 판단은 합의제 기구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필요
- 한편, 공정위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업들이 공동행위 인가 심사를 신청할 경우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 **(수용 불가)** **수용 불가**는 산업에 적용되는 「기업활력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 필요
- 개정안은 기업결합 심사 최종 주체를 주무부처의 장*으로 하고 있어 경쟁제한성 판단이 배제될 우려
- * 현행 법령에서는 주무부처의 장이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 효율성 증대 관련 의견 제출 가능 (기업활력법 제10조제8항)
-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엄밀한 경제적·법적 분석을 필요하므로, 전문성을 보유한 공정위가 심사하는 것이 타당
- 개정안은 공정위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쟁제한성이 아니라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이는 경쟁제한성 심사를 하는 공정위 기본 기능과 정면으로 배치
 - 게다가 공정위가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주무부처의 장은 고려만 하면 되고 기속되지도 않음
- 한편,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시 사전컨설팅* 지원을 통해 심사 속도를 제고,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추진 예정
- *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전 공정위와 사전협의 (자료제출 범위 조율 등)